

평화재단 · 미래재단 공동포럼

# 한미 FTA를

# 다시,

- 일시 : 2006년 9월 1일(금) 오후 2:00 - 5:00
- 장소 : 성공회 서울교구 1층 강당
- 주최 : 평화재단 | 미래재단

# 살펴보고

# 내다본다



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재단

평화재단·미래재단 공동포럼

# 한미 FTA를 다시, 살펴보고 내다본다

2:00 개식 | 인사말

2:15 사회 : 구해우 (미래재단 대표)

한미FTA의 교섭원칙과 한국의 미래

2:20 발표 :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40 토론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FTA 연구센터 소장)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3:20 휴식과 다과

3:35 전체 토론

4:30 마무리 토론

5:00 폐회

- 
- 일시 : 2006년 9월 1일 (금) 오후 2:00 - 5:00
  - 장소 : 성공회 서울교구 1층 강당
  - 주최 : 평화재단 (581-0581) | 미래재단 (779-0717)
-

---

# 한미 FTA 개방과 경쟁을 통한 도약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

---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 석사 및 법학박사 (1982, 85),

미국 밀뱅크트워드 및 스카덴아르프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1985-89),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1993-98),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자문관(1999-2003) 근무 후

2003.5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거쳐,

2004.7월부터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으로서

한미 FTA 등 우리의 통상외교를 이끌고 있음.

# 한·미 FTA, 개방과 경쟁을 통한 도약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목차

1. FTA, 왜 해야만 하는가?
2. 왜 미국인가?
3. 한·미 FTA 기대효과
4. 협상일정 및 제1~2차 협상 결과
5. 향후 추진전략

## 1. FTA, 왜 해야만 하는가?

### 현상만족시 경쟁에서 낙오

11위 교역국 경쟁력유지 不可

현상만족시

중국·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

대외의존도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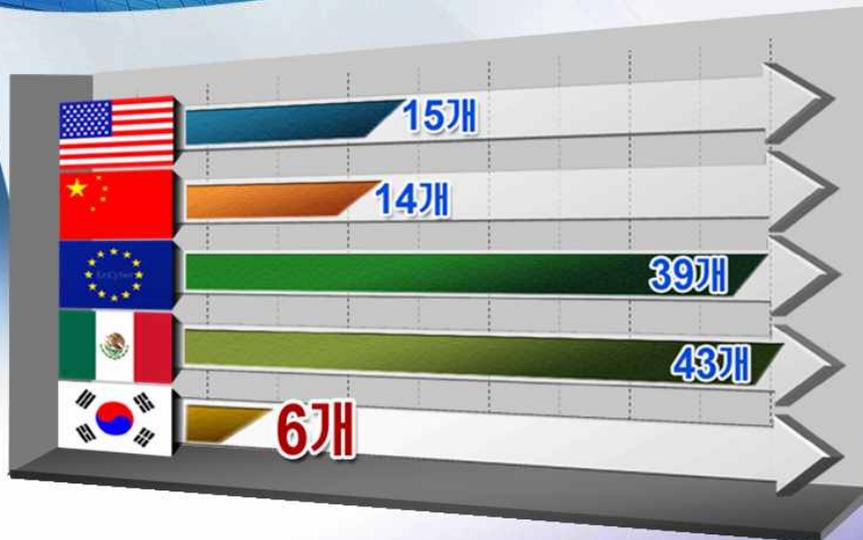
## 문닫고 성공한 나라는 없다!

개방에 소극적 정책 추진 → 경제발전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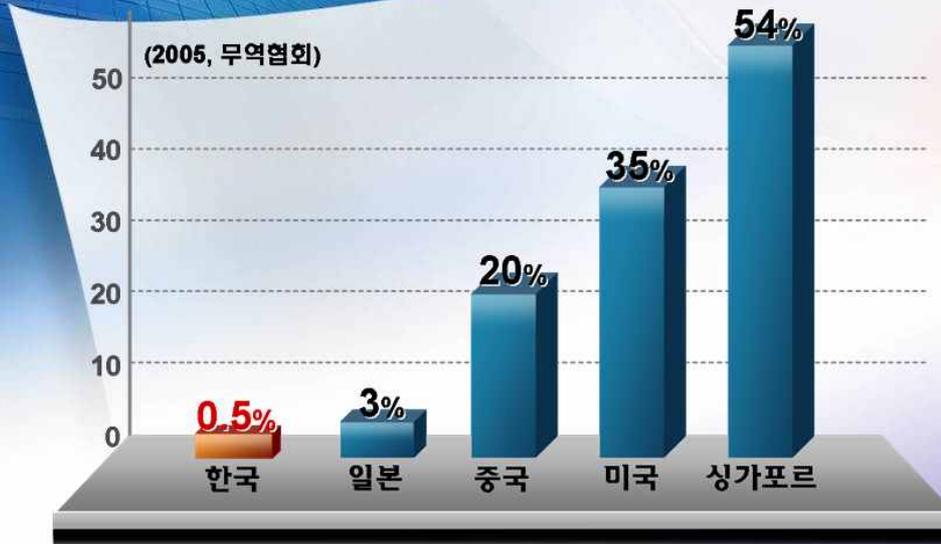
## 세계는 FTA 체결 전쟁중

현재 발효중 FTA가 197개, 세계 무역의 50% 차지



# 개방하지 않으면 경제활력 위축

주요 국가별 FTA 교역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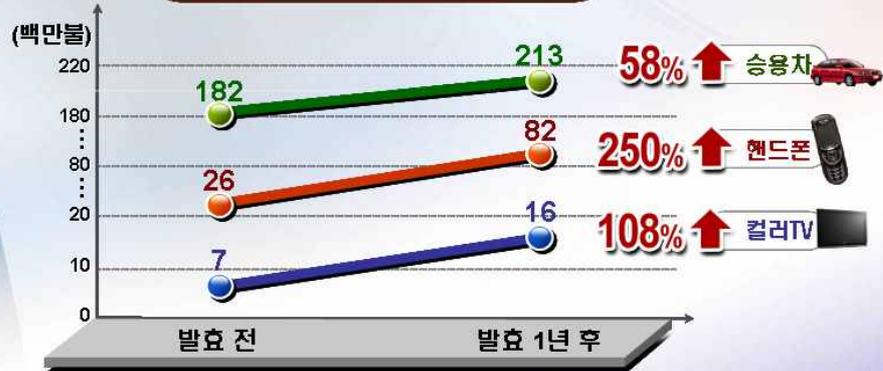
# 한국의 FTA 추진현황



## 한-칠레 FTA, 1년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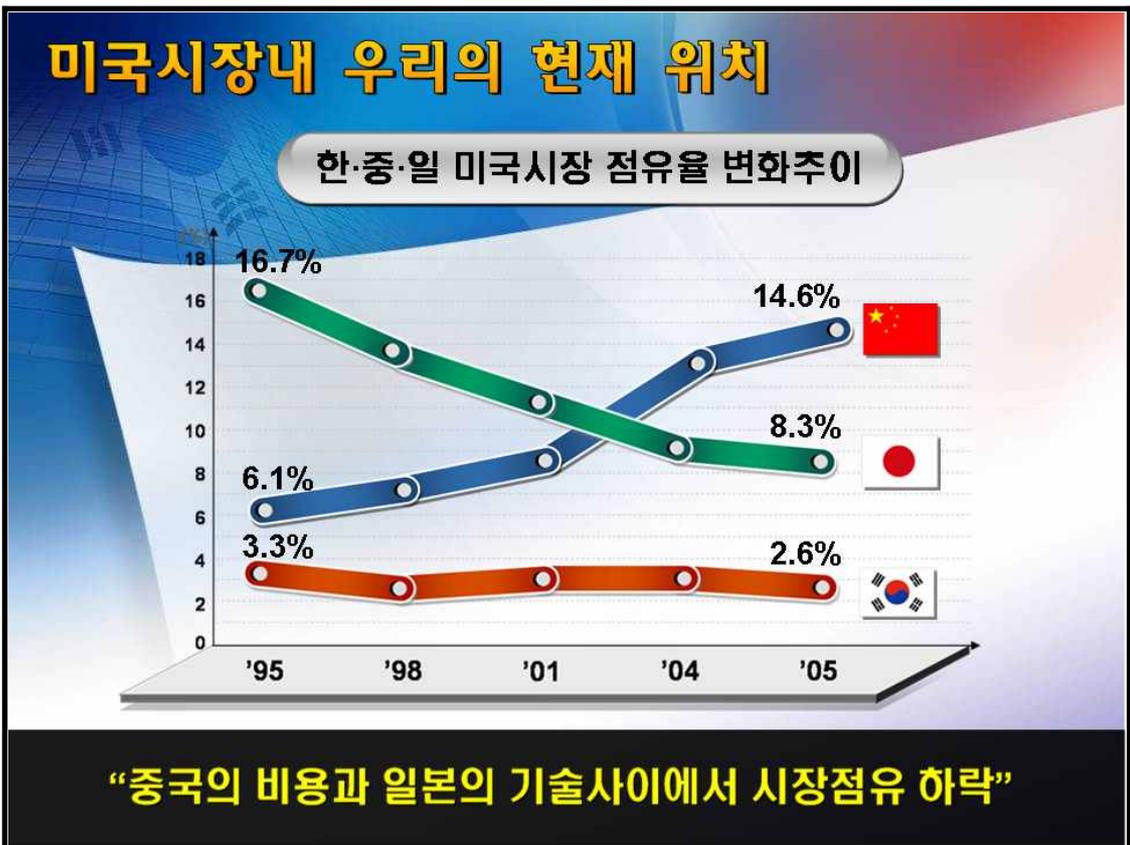
- 한-칠레 FTA가 '04.4월 발효된 후  
1년만에 대칠레 수출이 5억불에서 8억불로 증가(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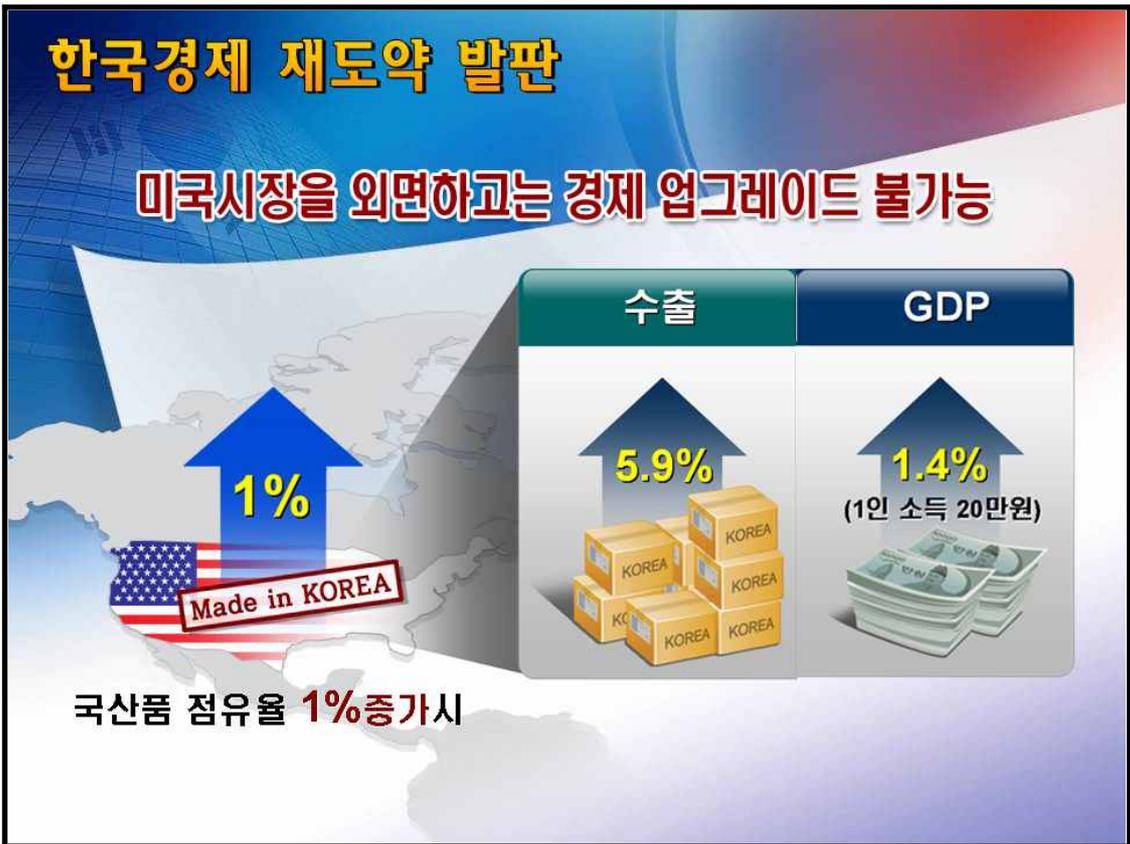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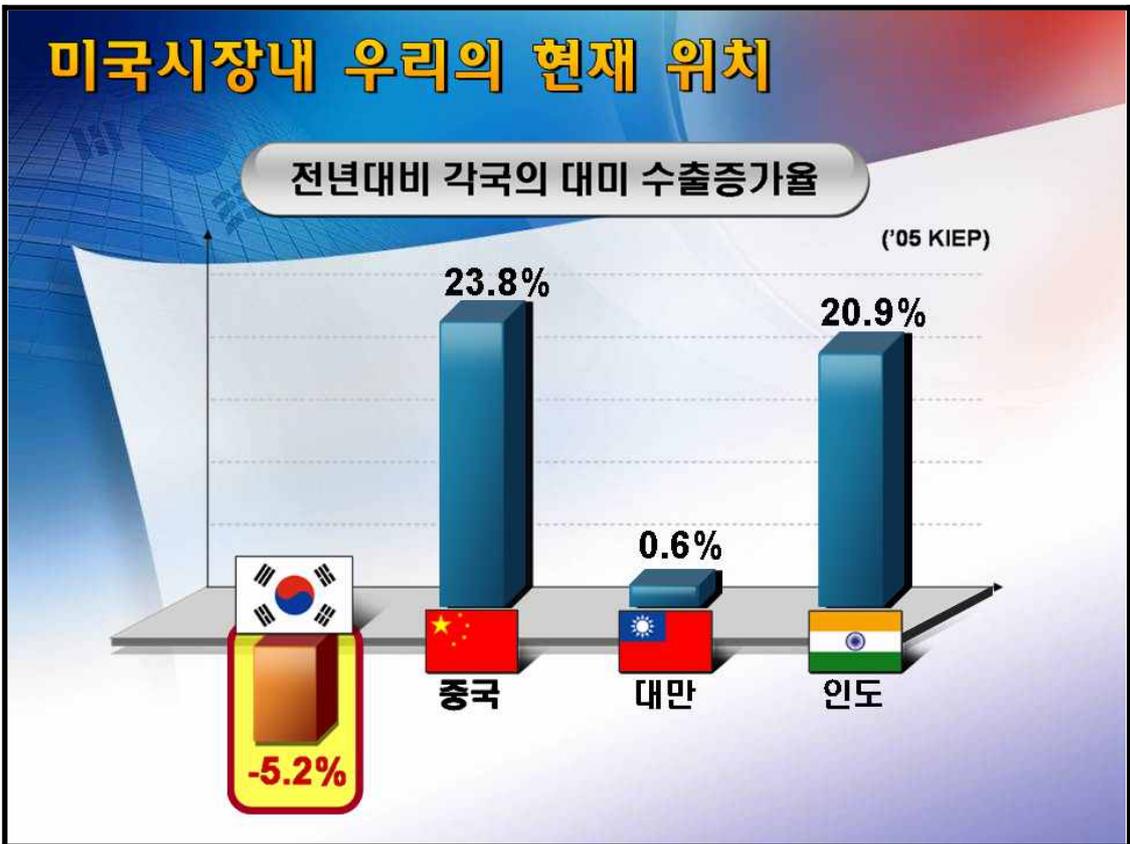
###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 효과



- 반면, 칠레산 포도, 키위 등 신선과일류는 당초 수입 증가 예상치인 66억원보다 적은 28억원 수준에 그쳐, 소득보전신청을 한 농가도 전무

## 2. 왜 미국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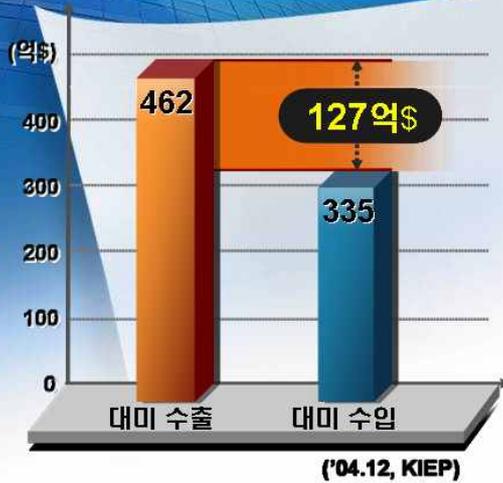
### 3. 한·미 FTA 기대효과

## 가시적 효과

(보이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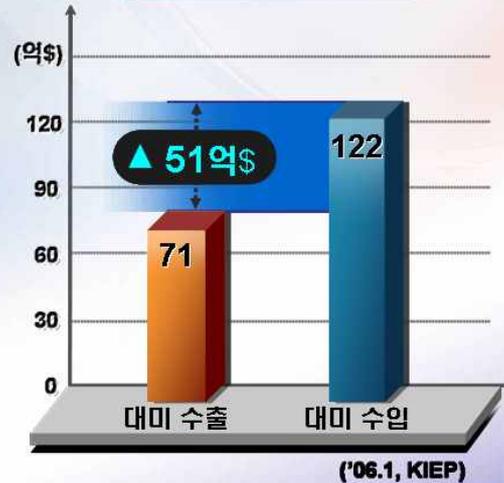
## 미국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수출증가

최대 예상치



“대세계 무역흑자 106~138억불 증가”

최소 예상치



“대세계 무역흑자 11억불 감소”

## 외국인투자(FDI) 유입 확대

“총 216~319억불의 FDI 유입 예상”



투자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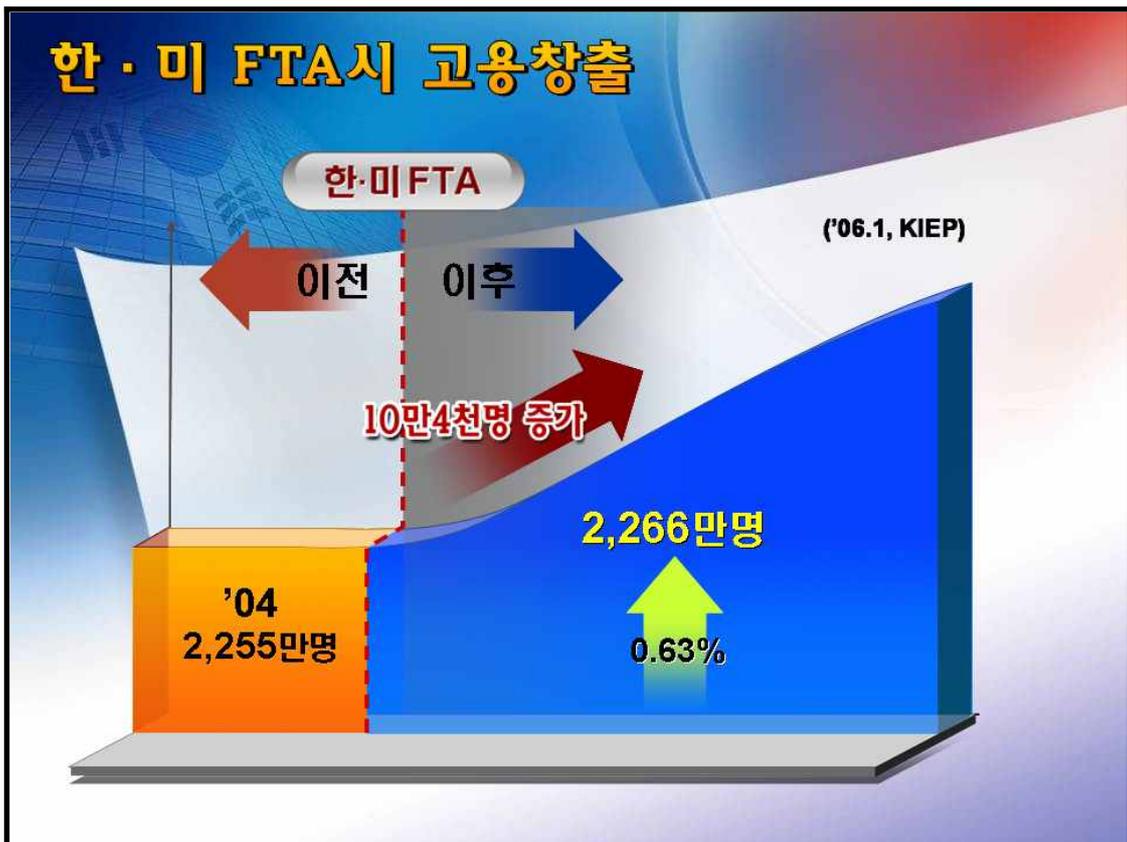
➔ 외국인 투자 대거 유입

## 국민소득 증대

한·미 FTA 체결시 국민1인당 30만원의 소득증대 예상

구 분	FTA 체결전(2004)	FTA 체결후 (장기)	
		금액	증가액
GDP	6,797억불	6,932억불	135억불 (13조9천억원) ↑
1인당 국민 소득	14,162불 (1,464만원)	14,444불 (1,494만원)	282불 (30만원) ↑

## 한·미 FTA시 고용창출



## 미·칠레 FTA



- 2004년 미·칠레 FTA발효
- GDP성장률 3%('03) → 6%('04)



## 미·싱가포르 FTA



- 2004년 미·싱가포르 FTA발효
- GDP성장률 2%('03) → 8%('04)



# NAFTA(멕시코)



- 1994년 NAFTA발효
- GDP성장률 10년간 연평균 3.3% ('94~'04)



# NAFTA(멕시코)

## < 대미 수출입 추이 >

(단위 : 억달러)

NAFTA이전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연평균('82~'93)
수출	111	130	141	133	104	133	135	162	188	340	375	428	198
수입	90	55	71	99	83	91	143	171	218	406	487	452	197
무역수지	21	75	70	34	21	42	-8	-9	-30	-66	-112	-24	1

NAFTA이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연평균('94~'05)
수출	516	662	805	941	1029	1203	1476	1402	1430	1468	1651	1831	1201
수입	547	538	675	820	932	1052	1275	1137	1065	1056	1095	1183	948
무역수지	-31	124	130	121	97	151	201	265	365	412	556	648	253

## NAFTA 이후 멕시코 양극화? (1)

- NAFTA 이후 멕시코 소득분배는 오히려 개선
  - ※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중류층 소득점유율 비교
  - NAFTA 전('92) 18.4% → NAFTA 후('02) 19.4%

구분	NAFTA 전		NAFTA 체결 후				증감률 ('92~'02)
	'92	'94	'96	'98	'00	'02	
하류층 20%	3.5%	3.3%	3.6%	3.1%	3.3%	3.7%	↑ 0.2%P
중류층 40%	18.4%	17.7%	18.9%	18.2%	18.3%	19.4%	↑ 1.0%P
중상류층 30%	34.5%	34.4%	35.2%	34.2%	34.2%	35.6%	↑ 1.1%P
상류층 10%	43.6%	44.6%	42.3%	44.6%	44.3%	41.3%	↓ 2.3%P

## NAFTA 이후 멕시코 양극화? (2)

- 1인당 실질구매력은 NAFTA 체결 후 증가 : '92년 6,720불 → '05년 10,090불

구분	NAFTA 전		NAFTA 체결 후				'05	
	'92	'94	'96	'98	'00	'02	액수	증감률 ('92~'05)
1인당 구매력	6,720불	7,209불	7,155불	8,018불	8,964불	9,066불	10,090불	↑ 50.1%
1인당 GDP	4,205불	4,699불	3,590불	4,372불	5,955불	6,367불	7,183불	↑ 70.8%

- 오히려 양극화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 <지니계수 비교>

연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96	0.454	0.464	0.602
'98	0.476	0.477	0.600
'00	0.481	0.484	-
'02	0.454	0.518	0.589
'04	0.460	0.488	0.572

## NAFTA 체결시 멕시코('94)와 현재의 한국 경제('05)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

- 수출의 대미 의존도 : 멕시코 85% vs 한국 14.5%
- 1인당 GDP : 멕시코 4,700불 vs 한국 16,300불

멕시코('94)	구분	한국('05)
4,208억불	GDP	7,875억불
4,699불	1인당 GDP	16,304불
1,482억불	교역규모	5,457억불
84.7%(516억불)	대미수출의존도(수출액)	14.5%(413억불)
68.9%(547억불)	대미수입의존도(수입액)	11.7%(306억불)

## 미 · 이스라엘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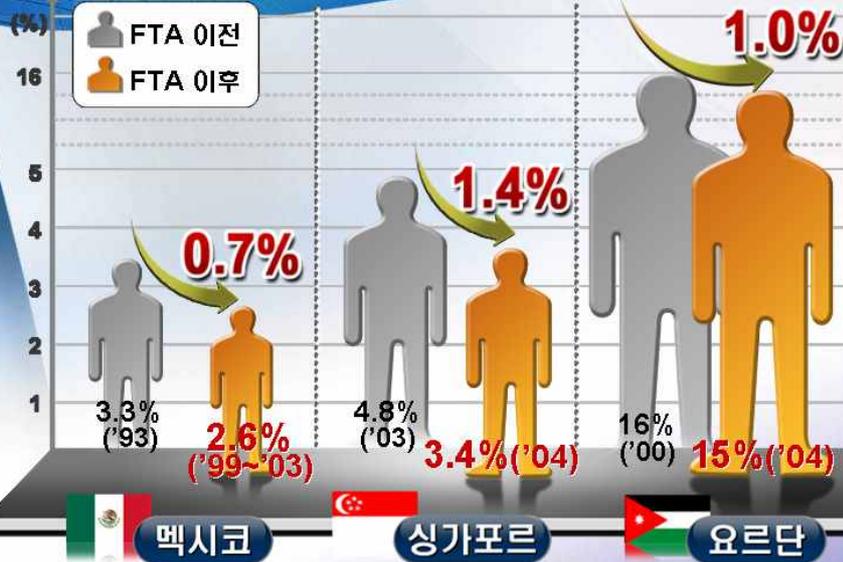


- 1985년 발효
- 10년간 연평균 5.0%의 높은 GDP성장



## 미국과 체결한 FTA 고용창출사례

### 각국의 실업률 추이



## 분야별 영향 분석

###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정인교, 2005)

분야	대미 수출입			대세계 수출입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합계	↑ 44억불	↑ 53억불	↓ 9억불	↑ 103억불	↑ 60억불	↑ 43억불
자동차	↑ 13.0	↑ 1.9	↑ 11.1	↑ 16.1	↑ 2.4	↑ 13.7
섬유·의류	↑ 5.2	↑ 0.4	↑ 4.8	↑ 7.9	↑ 4.7	↑ 3.2
전기·전자	↑ 10.3	↑ 6.5	↑ 3.8	↑ 30.1	↑ 15.3	↑ 14.8
기계	↑ 8.1	↑ 26.2	↓ 18.1	↑ 16.6	↑ 20	↑ 3.4
기타수송장비	↑ 0.2	↑ 2.6	↓ 2.4	↑ 4.7	↑ 2.7	↑ 2.0
철강·금속	↑ 3.9	↑ 7.1	↓ 3.2	↑ 7.3	↑ 10.3	↓ 3.0
항공 (의약품 포함)	↑ 2.9	↑ 6.7	↓ 3.8	↑ 17.4	↑ 3.6	↑ 13.8
기타제조업	↑ 0.8	↑ 1.1	↓ 0.3	↑ 2.9	↑ 2.4	↑ 0.5

## 분야별 영향 분석

### 대미 50대 수출품목의 수출증가 예상

(정인교, 2006)

품 목 명	HS 6단위	미국 평균관세 (%)	대미수출(백만불)		한·미 FTA시 수출증가예상액
			2004년	2005년	
합 계			247억불	227억불	40억불
승용차 (1500-2999cc)	870323	2.5	7,092	5,953	11억6천만불
텔레비전 (LCD 포함)	852812	2.6	717	593	6억1천만불
승용차 (3,000cc 이상)	870324	2.5	2,476	2,731	5억3천만불
안테나 (TV, 레이더)	852990	2.3	485	432	3억9천만불
비디오 모니터	852821	2.6	249	186	1억9천만불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851650	2.0	219	163	1억3천만불
자동차타이어	401110	3.7	380	424	1억2천만불
양말류 (면제)	611592	8.2	132	143	1천3백만불
건조기	845129	2.6	2	98	1억1백만불
세탁기	845011	1.4	66	152	8천4백만불
라디오	852731	1.5	140	142	8천4백만불
경질석유 및 조제품	271011	7.0	98	119	6천5백만불
평판압연제품(3mm미만)	720839	3.8	131	142	5천만불
카메라 및 카메라레코더	852540	1.1	174	117	4천9백만불

## 분야별 영향 분석

품 목 명	HS 6단위	미국 평균관세 (%)	대미수출(백만불)		한·미 FTA시 수출증가예상액
			2004년	2005년	
금속 절삭기공용의 선반	845811	4.4	73	114	4천7백만불
송신기기	852510	1.2	172	97	4천6백만불
공기조절기	841510	1.1	218	102	4천3백만불
차량 사시	870899	0.8	349	620	4천만불
버스용 공기타이어	401120	2.5	218	230	4천만불
세탁기 (10kg 초과)	845020	1.0	4	101	4천만불
금속밸브	848180	3.7	85	98	3천4백만불
차량 에어백	870829	2.5	73	170	3천만불
인조섬유	611030	17.0	356	123	2천5백만불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70839	1.3	60	109	1천1백만불
평판압연제품 (3-4.75mm)	720838	0.5	168	167	8백만불
로우프 및 케이블	731210	0.5	127	163	8백만불
폴리에스테르	550320	4.4	139	157	8백만불
평판압연제품 (금, 니켈 도금)	721070	0.6	79	138	7백만불
유전·가스전용 케이싱과 튜빙	730620	0.4	76	140	5백만불
인쇄용 지와 판지	481019	0.2	206	197	3백만불
철강제 못, 압정, 도용핀	731700	0.2	126	113	2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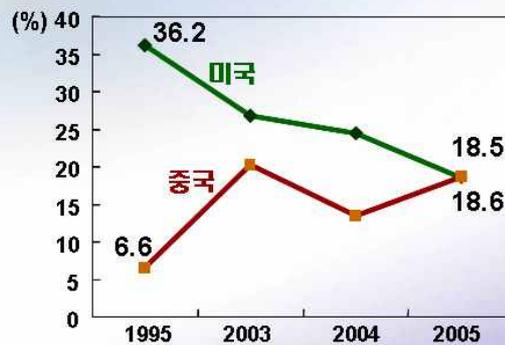
## 분야별 영향 분석

###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현황

(농림부 자료)

	1995	2003	2004	2005
전세계	96.7억불	102.2억불	112.0억불	118.9억불
미국 (비중)	35.1 (36.2%)	27.4 (26.8%)	27.5 (24.5%)	22.0 (18.5%)
중국 (비중)	6.4 ( 6.6%)	20.6 (20.2%)	15.0 (13.4%)	22.2 (18.6%)

< 미국과 중국의 우리 농산물시장 점유율 추이 >



## 분야별 영향 분석

### 주요 농산물 수입대체 효과

(KIEP, 2006)

	한·미 FTA 이전(2005) 대미 수입액 (점유율)	한·미 FTA 이후 대미수입액 (점유율)	대체규모 (대미전환비율)
옥수수	3.1억불 (26%)	7.9억불 (65%)	4.8억불 ( 61%)
대 두	2.4억불 (59%)	3.4억불 (85%)	1.0억불 ( 29%)
밀	2.6억불 (39%)	3.4억불 (50%)	0.8억불 ( 24%)
오렌지	1.3억불 (77%)	1.4억불 (90%)	0.1억불 ( 7%)
쇠고기	0.03억불 ( 1%)	5.6억불 (78%)	5.6억불 (100%)
계	9.4억불 (29%)	21.7억불 (68%)	12.3억불( 57%)

# 분야별 영향 분석

## I 주요 농산물 품목별 세부 영향 분석

(단위: 억원)

구분	국내생산 ('04)	자급율	농림부 (2006.2 대경위)	KIEP 서진교 (2006)	
곡물	옥수수	450	0.7%	FTA로 인한 생산 영향 없음	FTA로 인한 생산 영향 없음
	밀	112	0.2%	FTA로 인한 생산 영향 없음	FTA로 인한 생산 영향 없음
	대두	4,314	7.3%	관세(487%)철폐로 국내산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생산이 상당히 감소할 전망 (현행 할당관세 3~5%)	FTA로 인한 생산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산은 여타국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
축산물	쇠고기	28,937	36.6%	개방확대의 불안감 등 심리적 요인으로 단기간 내에 생산량이 급감할 가능성	미국산이 여타국가의 점유율을 대폭 잠식할 것이나, 국내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한우가격 급락가능성
	돼지고기	36,668	86.7%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25%), 국내산에 대한 영향 보다 수출국간 경쟁심화 전망	수입이 다변화되어 있어 미국으로의 수입선 전환효과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
	닭고기	9,476	81.5%	상대적으로 수입증가가 적을 것으로 예상	미국산 수입이 일부 증가할 것이며 여타국 시장점유율도 일부 잠식

# 보이지 않는 효과

## 대외신인도 향상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제고

'04.1 마·칠레 FTA발효 후  
칠레 국가신용등급 A- → A로 상향조정

국제사회에서 Korea Discount를 극복



## 개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한·미 FTA에 따른 단계적 시장개방  
→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E-마트 점포수 : 국내 79개 (5만명 고용)  
중국 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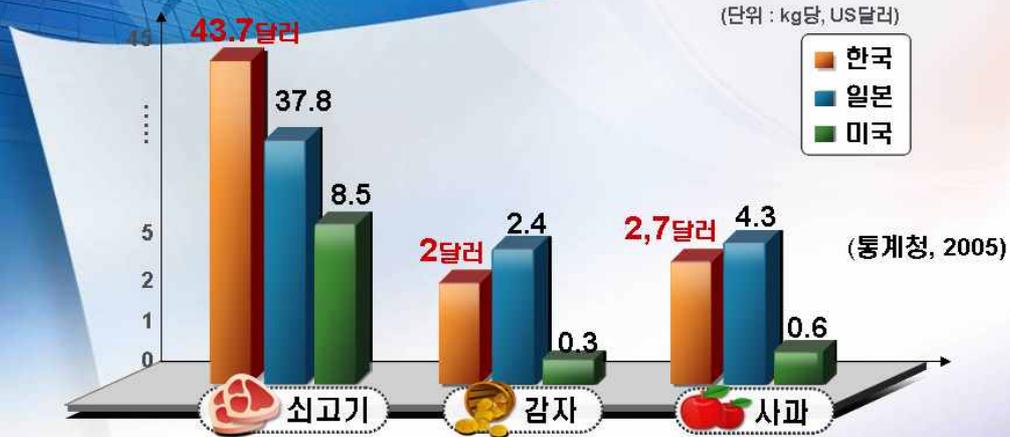
국내 유통기업 급성장



1996년 유통서비스  
시장 전면개방

• '99-'03년 5개년간 세계 소매업체 이익률 증가율 순위 (Global Powers of Retailing, 2004)  
- 1위 일 Daiei, 2위 신세계(이마트), 3위 미 CVC, 4위 미 Costco, 5위 롯데쇼핑

## 서민가계에 실질적 도움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식료품 물가를 하락시켜 서민가계부담 경감

## 한·미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승격

### “동반자적 관계”



'06 한·미 FTA 체결

'53 한·미 상호방위조약

## 동북아 허브로 도약



## 4. 협상일정 및 제1~2차 협상 결과

## 한·미 FTA 준비과정

'01~'06

### 분기별 한·미 통상점검회의 개최

- 2001년부터 분기별로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정부차원 협의절차(14회)를 통하여 양국 통상제도 및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이해를 공유

'03. 8

### FTA 추진로드맵 수립 -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추진

- 전문가 연구 : 정부 및 민간 주도 연구용역, 세미나
- 실문조사 : 응답대상 대부분 추진 찬성  
- '04.11 전경련(87%), 12월 무역협회(75%), 한국갤럽(80%)

'05. 2~4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3회)

- 양국간 FTA 기대효과, 미국이 기체결한 FTA 내용 등 검토

'05 연중

### 6차례에 걸친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

- 미 의회와 업계 설득, 우리측이 적극적인 노력 전개

**“우리 정부의 전략적, 주도적 준비로 한·미 FTA 출범을 도출”**

## 협상 일정

'06

### 제1차 협상

- 6.5 ○ 양측 기본 입장 교환

?

6.9  
(워싱턴)

### 제2차 협상

- 7.10 ○ 상품양허안 작성 방식 합의

?

7.14  
(서울)

- 서비스/투자 유보안 교환

- 8.15 1차 양허안 교환

### 제3~5차 협상

- 9.6 ○ 후속협상 과정에

?

9.9  
(시애틀)

- 협상쟁점별 이견 축소 및 합의 도출

10월

12월

# 17개 분과에서 협상 진행



상품무역분야	서비스/투자 분야	기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무역 (자동차 및 의약품)</li> <li>◦ 농업</li> <li>◦ 섬유</li> <li>◦ 원산지/통관절차</li> <li>◦ 무역구제</li> <li>◦ 기술장벽(TBT)</li> <li>◦ 위생검역(SP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li> <li>◦ 국경간 서비스무역</li> <li>◦ 금융서비스</li> <li>◦ 통신/전자상거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li> <li>◦ 지재권</li> <li>◦ 정부조달</li> <li>◦ 노동</li> <li>◦ 환경</li> <li>◦ 분쟁해결/투명성/충직</li> </ul>

## 상품무역 분야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상품 양허안 작성 기본원칙 합의 (즉시철폐/3년/5년/10년/기타)
- 미측은 내국민대우 예외 인정 요구 (Jones Act)
- 관세제도 운용에 대한 이견 (관세감면, 관세환급, 조정관세)
- 물품취급수수료 (수입가격의 0.21%) 면제 요구 ➔ 미측 검토가능 표명

**농업**

- 농산물 양허안, 작성 기본원칙 합의 없이 각자 작성
- 우리측은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을 강하게 요구
- 미측은 관세할당제도(TRQ)의 엄격한 운영 요구

## 상품무역 분야



### 섬유

- 섬유류 양허안, 작성 기본 원칙 합의 없이 각자 작성
- 우리측은 섬유 제품의 예외없는 관세 양허 및 조기철폐 요구
  - ▶ 미측은 예외없는 관세 양허원칙에 동의
- 우리측은 섬유분야 완화된 원산지 기준 도입을 주장
- 미측은 섬유 세이프 가드 도입을 주장



### 원산지 / 통관절차

- 우리측은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을 요구
  - ▶ 미측은 실무 협상급에서 협상권한 없다는 입장 견지

## 상품무역 분야



### 무역구제

- 우리측은 반덤핑 발동요건의 엄격화를 요구
  - ▶ 우리업계 관심사항임을 강조
- 우리측은 다자세이프가드 조치의 상호 적용 배제를 요구



### 위생검역 (SPS)

- 미측은 SPS관련 협의채널로 상설 위원회 구성을 주장
  - ▶ 우리측은 접촉선만 지정할 것을 주장

## 상품무역 분야



### 자동차

- 자동차 관련 세제, 표준,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계속 논의
- 미측은 배기량 기준 세제(3종)의 폐지를 요구
  - ▶ 우리측은 폐지불가 입장을 표명
    - 국내 수입차 시장의 확대 현황 설명



### 의약품/의료기기

- 미측은 우리가 추진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FTA 틀내에서의 논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불만
  - ▶ 우리측은 동 방안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

## 서비스/투자 분야



### 투자

- 우리측은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인정을 요구
  - ▶ 미측은 부정적 입장 표명
- 양측은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의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
  - ▶ 동 절차의 적용범위, 중재절차의 공개 수준에 대해 기존 입장 견지



### 국경간 서비스무역

- 서비스/투자 유보안 초안 교환
  - ▶ 우리측 유보안은 보수적으로 작성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관심을 전달
- 우리측은 일시입국 절차의 간소화 및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을 요구
  - ▶ 미측은 의회 소관 사항으로 수용 어려움 표명

## 서비스/투자 분야



### 금융서비스

- 양측은 금융분야의 국경간 거래는 제한적으로 열거분야에만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
- 미측은 우리 국내법 테두리 내에서 신금융서비스의 공급 허용을 요청



### 통신 / 전자상거래

- 미측은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
  - ▶ 우리측은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역할이 필요함을 주장
- 우리측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현행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되, WTO 결정시 재검토 요구
  - ▶ 미측은 무관세관행의 영구화 주장

## 제도 분야

### 경쟁

경쟁분야에서 양측은 정부의 독점지정 권한 유지에 합의  
단, 미측은 정부독점 및 공기업에 반경쟁적 행위 금지의무 부과 주장

### 지재권

지재권 분야 양국간 기본입장과 제도 현황 파악에 주력  
미측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70년), 지재권 침해시 법집행 강화 강조

### 노동/환경

무역 및 투자 증진 위한 보호수준 완화금지 기본 합의  
노동분야 공중의견제출제도, 노동/환경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방법  
양측 이견 확인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를 제고

### 투명성

양측은 협정내용 관련 법령 제·개정시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원칙에 의견 일치  
미측은 입법예고기간 연장, 의견반영결과 공표 등 강화된 투명성 요구

## 한미FTA와 지방경제

지자체 특성을 감안한 경제성장 전략으로  
한미FTA를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

제조업 : 지역별-업종별 특화된 대비책 필요

→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 최종소비재 수출 증대 / 경쟁 심화도 대비

투자 유치 : 한미FTA로 약 2-3백억불 투자 유치 증가 예상

→ 지자체별 외국 투자유치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농산물 시장 : 수입농산물 증가 예상

→ 농림부 보완대책 및 피해 지원책 세부 시행 / 시장개척 지원

금융 서비스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장

→ 미측의 우체국 보험의 민영화 요구 없음 / 농협 서비스 유지

## 5. 향후 추진전략



##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

###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협상과정 진행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

**이해단체와 적극적인 협의 노력 전개**

- 경제계와 협력과 대화를 강화, 국내 업계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
- 이해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의견수렴

**언론홍보 등 대국민 이해노력 강화**

- 세계 최대시장 안정적 확보
- 세계 11위를 넘어서는 경쟁력 강화
- 동아시아국가 중 미국과 최초의 FTA
-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
- 한·미 관계를 호혜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

**한·미 FTA,  
미래 한국을 위한 필수전략입니다!**



---

# 1

## 한미 FTA 포럼 토론문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 1. “문 닫고 성공한 나라는 없다” (5쪽)

- 문 닫자는 주장은 우리 사회의 극소수 사람들의 것
- 문을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 열지를 중장기적 외교 목표와의 정합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다수
- 개방 전략에 따라 향후 한국의 자본주의 유형이 결정 (VOC 논의)
- 전략 없이 문을 열어 실패한 나라는 다수

### 2.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이 FTA로 상승될 것인가? 즉 수출 증대 효과가 그리 클 것인가?

- 최소예상치(17쪽)가 상식에 부합: “수출은 아마도 증가하겠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일지는 알 수 없다. 수입의 증대 역시 그러하다. 만약 수입 증대분이 수출 증대분을 초과하는 정도가 된다면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오히려 대미 무역적자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 2004년 기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11.9%인 반면, 미국은 4.9% 수준으로 한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양국이 동시에 서로에 대하여 무관세 시장으로 바뀔 경우 수출 증대 효과는 당연히 미국 측에 더 크게 발생한다. 미국이 한미 FTA에 적극적인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점 때문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2001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FTA가 2002년에 체결될 경우 그로부터 4년 후 미국의 대한 수출은 192억 달러(54%),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3억 달러(21%)가 증가된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거라는 KIEP의 분석과 일치하는 전망이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미국 측 전망에 의하면 한국의 대미 수입은 수출증가분의 2배 이상 증가되리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수출입 추세가 유지된다면 한미 FTA 체결 4~5년 뒤면 한국이 오히려 대미 무역적자국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사실 대미 수출 증대로 한미 FTA의 수혜집단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 산업은 KIEP 등의 분석을 볼지라도 소수에 불과하다.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의류 산업 등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른 바 이 3대 수혜업종에서의 이득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전기 전자나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관세가 각각 2%와 2.5%의 낮은 수준이라 이 관세들이 다 없어진다 해도 커다란 수출증대 효과가 나올 소지는 적다. 더구나 이들 산업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현지 생산이나 우회 수출 등을 늘리고 있는 터라 FTA 체결에 따른 추가 이득 발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한국의 주력 전자제품들인 휴대폰, 반도체, 컴퓨터 등의 경우 지금도 이미 무관세 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FTA 체결로부터 얻을 추가이익은 없다고 봐야한다. 자동차 산업에서 우려할 점은 한미 FTA 체결로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자동차의 수입이 늘 경우 수입이 오히려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섬유 및 의류 업종의 경우 미국의 관세가 10% 이상인지라 일견 상당한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듯하지만,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할지라도 워낙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국이나 동남아산 제품을 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섬유 완제품의 기초 원자재인 실 혹은 원사의 생산지에 따라 수출품의 원산지를 엄격히 규정하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인 안포워드(Yarn Forw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 원부자재를 가격이 싼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주로 수입하여 쓰고 있는 한국의 섬유 및 의류 기업들이 과연 이 장벽을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 할 것이다.“

3. FDI 증대(18쪽) 뿐 아니라 FPI 증대도 엄청날 수 있다. FDI 중에서도 Greenfield 보다 적대적 M&A 형 투자가 증대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미국과 제3국으로부터 더 많은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그를 기반으로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유입될 해외 자본의 대부분이 단기적 투기 성격이 강한 포트폴리오(portfolio) 간접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일 경우에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역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IMF 금융위기 이후 2004년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온 외자 중 FDI는 21%에 불과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는 그 보다 훨씬 많은 51%에 달한다. FDI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투자형태별로 보면 건전성 FDI라 할 수 있는 공장설립형(Greenfield) 보다는 적대적 M&A형 투자가 IMF 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에는 그 비중

이 4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자본의 경우 그 투자방식은 대부분 포트폴리오 간접투자였다고 한다. 2003년의 경우 미국의 대한 투자 중 FDI 대 포트폴리오의 비율이 12억 달러 대 534억 달러 즉 간접투자와 비교한 직접투자의 비율은 약2.2%에 불과했다. 한미 FTA 체결이 외국인 특히 미국인의 대한 투자 방식을 급변시킬 까닭은 딱히 없다고 볼 때, 한미 FTA로 인한 외국인 투자의 증대는 오히려 한국 자본 시장의 취약성 심화를 우려케 하는 대목인 것이다.

#### 4. 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 ● 유통시장 개방으로 이마트 등이 성장한 건 사실이나(38쪽), 사회적 부작용 컸다:

이마트 등의 부상은 한국의 소수 대기업의 성공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기실은 한국의 유통시장 구조가 외국 대기업과 국내 대기업으로 양분화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퇴출당한 것이다.<sup>1)</sup> 물론 유통개혁은 필요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과 같이) 장기적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했다. 국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행된 급격한 외압형 유통개혁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업자 혹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 문제에 일조를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 ●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메커니즘 설명이 필요하다:

한미 FTA로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메커니즘이 가동되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냥 믿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그리고 비교우위론을 적용해볼지라도)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경쟁력 제고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 서비스 기업들의 경쟁력은 미국에 비교할 정도도 못되기 때문이다. 기업 인수합병 (M&A)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장악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은 포기하고 우리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몇 몇 첨단 제조 산업을 키우자는 주장이 더 타당할 지도 모른다.

1) 종사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매출액 감소 추이(총매출액 중 비중)를 보면 86년 93.3%에서 91년 88.6% 그리고 96년에는 81.2%로 여기까지는 완만히 감소, 그러나 2001년 65.7%로 급격히 감소. 이 추세로 보았을 때 2006년 현재는 50% 정도로 추산됨. 한편, 재래시장의 피해도 심각하여 매출액 감소는 98년 21조에서 2000년 15조, 그리고 2003년에는 13조를 기록. 당연히 시장 내 빈 점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 공점포율 18%.

우리 제조업이 지금 정도의 경쟁력을 얻게 되기까지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외적 보호주의 정책과 대내적 산업정책을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방은 경쟁력이 향상되는 정도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경제성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법칙이다.”

#### 5. 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서민가계에 실질적 도움 (39쪽)

- 국제정치경제 이익집단론의 고민: 소비자와 생산자가 명확히 구분되는가?
- 개방의 범위와 폭이 크면 클수록 이 구분은 더욱 어려워짐
- 미국과 같은 세계 최고의 선진경제대국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할 경우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농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므로 이 경우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의미는 생산자그룹(각 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거대함으로 인해 퇴색
- 퇴출, 도산, 실업 등이 더 큰 사회적 문제

#### 6.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

- 포괄적 동반자 관계란 기존의 안보동맹에 ‘경제동맹’이 더해진다는 의미인가?
- 경제동맹이 갖는 함의는?

#### 7.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협상과정(45-52쪽) 중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과 꼭 얻어낼 것’ 등을 정해놓아야...

##### ● ‘절대로 수용 못할 것’ 예시 :

- 농산물 양허에서 쌀과 여타 민감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또는 유보
- 분쟁해결방식으로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수용 불가
- 주요 공공부문(의료, 교육, 전기, 가스, 에너지 등)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적용 제한
- 지적재산권 보호는 국제수준, 즉 TRIPs 수준으로 유지
- 약가 결정 시의 다국적 제약회사 참여 등 기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기초를 해치는 요구는 불용

- 광우병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은 쇠고기 수입 불가
- 국민들의 식품안전 불확실성과 관련 GMO 수입의 제한

● ‘반드시 얻어낼 것’의 예시:

- 투자와 관련 ‘간접수용’의 요건 구체화 및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의 선별등재 (positive list) 방식
-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는 선별등재방식 접근 및 보수적 허용
- 신금융서비스는 선별등재방식 접근 및 10년 이상의 유예기간 획득
- 농산물 및 투자 분야에서 ‘일시적 긴급조치(safeguard)’ 제도 설치
- 미국의 섬유산업 비관세 장벽인 ‘안포워드(yarn forward) 제도’ 철폐
-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WTO 수준으로의 개선
- 법률, 회계, 방송, 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시장자유화는 10년 이 넘는 이행기간 확보
-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8.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보상책 마련 방안 (56쪽)

● 보상책 마련 방안 예시:

- 2007년 4월 발효 예정인 '무역조정지원법'을 명실상부한 종합지원보상법제로 정립 하기 위하여 예산 및 지원 분야를 대폭 확대하도록 개정
- 현재 국회에 표류중인 '통상절차법'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한 이후 신속히 제정
- 구조조정과 보상에 관한 정부-사회 간 '사회적 합의체' 결성

●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예시:

-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개선율을 늦어도 2020년까지는 OECD 평균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 사회보장지출비의 GDP 비율을 늦어도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등에 보상책 마련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책 제공은 성공적 체결을 위한 필수 조건

---

## 2

# 한미 FTA 포럼 토론문

한미 FTA 이익 바로 알아야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FTA 연구센터 소장)

---

전세계적으로 FTA를 통한 경제동맹 구축이 한창이다. 이미 190개가 넘는 FTA가 체결되어 있고,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중단으로 인해 향후에도 FTA는 통상국가의 최대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경제여건상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더 많은 FTA를 체결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반FTA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 제1위 농업강국인 미국과의 FTA에 대해 우리 농업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도 농민들의 손실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노동조합이 설치된 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큰 업체일 것이고, 이들 업체의 생산품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을 것이다. 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것이고 이익은 종업원들에게 분배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수출확대로 재벌들만 이익을 본다고 하지만, 오늘날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기업은 공개되어 있고, 재벌들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 영향력이 큰 방송매체가 멕시코의 사례를 편파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역시 한미 FTA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반FTA 정서를 확대시키고 있다. 모 일간지 기자에 따르면, 멕시코 대선 기간동안 문제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슈는 NAFTA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분야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좌파 오브라도르 대통령 후보는 '재협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에 따라 멕시코 정치

권이 NAFTA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는 했다. 하지만, 심층보도를 하는 TV 프로그램이라면 멕시코의 빈민계층, 노점상 등의 사회문제를 FTA와 연관시킴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기 보다는 NAFTA를 보완하자는 멕시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어야 한다. 멕시코를 조금이라도 알고 보면 NAFTA 이전부터 멕시코는 빈부격차, 경직된 노사문화, 도시로 몰려든 빈민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심각했다. 미국과의 FTA를 체결했지만, 멕시코 정부는 개혁정책과 산업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실패했고, 그 결과 멕시코는 아직도 기존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된다.

어떤 단체는 멕시코 학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멕시코의 NAFTA 경험을 전달하려 했으나, 그 학자가 그 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멕시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은 애써 덮어두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멕시코는 미국 하청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산업경제구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등에서 미국 기업과 당당히 겨뤄 나가고 있는 산업을 가지고 있어 멕시코와 같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기 어렵다.

한미 FTA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양국간 검토대상이었으나, 우리 정부의 검토는 2003년 FTA 추진로드맵을 설정할 때 시작되었다. 이어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를 발효시키고,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 정부는 FTA 추진을 미국측에 수차례 제안하였다. 2005년 하반기부터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은 한미 FTA 검토를 공식합의하였다. 그결과 2005년 4회에 걸쳐 양국의 실무자들이 한미 FTA 검토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2006년 2월 양국 통상장관들은 한미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FTA 대상국으로서의 장점이 많은 국가이다. 미국의 GDP 규모는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최대 수입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 제2대 수출시장이나, 1위인 중국에 대한 수출의 약 절반은 경제특구에서 가공되어 미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수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실질적인 1위 수출대상국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평균관세율이 우리나라의 1/3 수준이므로 FTA 체결로 관세를 철폐할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기업에게 시장을 일방적으로 열어주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우리나라가 불리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시장은 우리나라의 15-17배 크기이므로 관세차를 고려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5배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관세율이 2.5%이므로 관세철폐가 수출증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즉, 우리 자동차업체는 평균적으로 수출로 5%의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5% 관세인하를 의미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소나타의 경우 관세철폐는 50여만원의 가격을 인하시키게 될 것이고, 우리 차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가격인하는 상당한 수요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섬유류의 경우, 미국측이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수출증가 효과가 작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채택되더라도 현재의 생산구조하에서도 우리 업계가 대미국 섬유 수출을 100% 증가시키는 큰 문제가 없다.

다른 국가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으면서,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더구나 다자무역협상도 부진한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FTA는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지난 7월 24일 라미 WTO 사무총장의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중단 선언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과거 어느 다자무역협상보다도 많은 이슈가 걸려있고,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하개발의제(DDA)가 제 속력을 낼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만약 협상타결이 지연되면 교역의존도가 높으면서 내수시장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란 점은 자명하다. 현재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인구 노령화 문제와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성장 동력의 약화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더 어렵게 한다.

FTA가 만능의 정책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다. 미국과의 FTA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내용을 보고 반대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FTA로 예

상되는 부작용은 협상과정에서 혹은 정부의 보완대책으로 최소화될 수 있다. 오늘날 통상 환경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 기업 및 국민경제에 가장 최선의 통상 인프라이다.

---

# 3

## 한미 FTA 포럼 토론문

한미 FTA 재검토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I. 한미 FTA의 특성

△ 한미 FTA를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은 필요하며 또한 불가피함.

● 한미 FTA는 농산물이나 제조업 중심의 물자의 자유교역 차원을 넘어 문화, 금융, 서비스산업 부문 등에서 초국가기업이 주도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차원의 국가 간 ‘자유 협정’ 형태임.

– 우리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함.

● GATT(1947) 및 WTO(1995)는 일반적으로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을 목적으로 체결된 다자간 협정체제로, 국가 간 ‘무역과 물자’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고자 한 국제기구 임.

● GATT 및 WTO 모두 20세기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산업국가 간 무역과 물자의 자유교역을 위한 국제무역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다자주의적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한미 FTA는 실물무역(Trade)부문은 부차적이며 – 이 부문이 지금 갈등적 현안으로 드러나 보이지만 – 문화, 금융, 서비스산업 부문에서의 거대자본의 자유를 보장하

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본질상 ‘자유자본협정’(Free Capital Agreement: FCA)의 성격임.

- 21세기는 사실상 농산물이나 제조업 중심의 무역 시대가 아니며, 자유무역협정의 전통적 ‘무역’은 초국적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시장질서 속에서 향후 점차 부차적인 사안이 될 것임.

● 따라서 한미 FTA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국내시장(국내금융시장, 국내 서비스산업 시장 등)의 성격에 비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현안보다는, 미국의 초국적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왜곡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에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음.

- 이는 한국경제의 미국경제에의 통합의 길을 열어 놓고, 한국경제의 자율성 영역이 거의 상실되어 국민경제를 피폐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II. 미국 주도 FTA의 문제점

● 미국 FTA의 핵심은 <서비스/투자 분야>, <제도 분야>의 경쟁, 지재권 분야임.

- 이는 모두 한국의 법, 제도, 관행의 변경을 요구하며,

-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민영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켈릭(Robert B. Zoellick 무역대표부(USTR) 대표-국무부 부장관-골드만삭스, 국무부 부장관 재직 당시 중국 및 동남아시아 대외정책 주도)은 자유무역만이 미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의 중국을 겨냥한 이해상관자론(stakeholder)과 특히, ‘경쟁적 자유주의’는 양자간 FTA 체결 논리의 핵심임.

- 미국은 '80년대 중반까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도하라운드까지 다자간 협상을 주도했다. 이에 2000년대 초반까지의 목표로 FTAA(전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을 통한 EU형 아

메리카대륙의 통합을 추구했으나 2005년 FTAA 남미의 반미 성향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

- 또 다른 한 축에서 진행되고 있던 MAI(다자간 투자협정)도 프랑스 등이 미국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지나친 요구로 무산되었고, 도하라운드도 칸쿤에서 좌절되었음

● 이즈음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였던 켈릭이 ‘경쟁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도입

하여 양자간 FTA 체결 방침을 선언하게 됨.

-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자간 FTA를 경쟁적으로 맺게 하겠다는 것으로, 그 내용은 'NAFTA 플러스 이상'임.

● NAFTA에는 '우리는 상대국가의 공기업 민영화를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나, 쥘릭은 '우리는 상대국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지한다'고 명확히 선언했음.

-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완화 지지 선언은 현존하는 FTA 중 가장 강력한 NAFTA보다도 더 강한 FTA를 맺어서 개방, 민영화, 긴축정책 관철의지 천명임.

- 또한 쥘릭은 미국은 앞으로 FTA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선언하였는데, 그 첫 번째 적용 대상 국가가 한국임.

- 對美 FTA 협상을 위해 네 가지 선결조건의 해결 문제는 협상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하기 힘들.

● 한미 FTA는 산업 및 제도의 미국 표준을 한국에 이식시켜 미국 표준에 의존케 만들며, 여기서 표준을 장악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내는 미국에 유리한 게임논리임.

● 따라서 미국 주도 FTA는 완전경제통합 전단계 성격으로, 한국 국내법, 제도, 관행의 변경을 불가피하게 함.

- 한국의 법과 제도의 훼손은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큼

## 1. 투자 (이하 NAFTA 11장 투자관련 챕터를 준용함)

가. <수용 및 보상>(Article 1110: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 '투자자보장' 의도는 처음 석유나 지하자원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좌파정권의 몰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투자자보호)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으나, 이후 수용(몰수 expropriation)로 바뀌면서 기업의 이윤에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된다는 데까지 확대되었음.

- 한국은 미국이 우려하는 '수용'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국가가 아님.

### <간접수용>

● 이는 수용을 넘어 기업 이윤 자체를 저해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투자보호 범위가 ‘직접적’ 수용의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 수용으로까지 보상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여기서 ‘간접적’(indirectly) 수용의 폭과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또한 공공목적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면(except: for a public purpose), 누가 특정한 수용 사안을 공공의 목적임을 판정하는가?

● ‘간접수용’은 최고의 독소조항으로, 해당 국가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논리임.

– 바로 이것 때문에 MAI가 무산된 이유이기도 한데, 한미 FTA 조항에는 엄청난 폐해가 예상되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곤란함.

\* 정부는 투자에 대한 쟁점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 이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에 미국측과 쟁점이 없다는 말인가?

### <대우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 NAFTA 규정(Article 1105)에서 ‘완전한’(fully) 보호 및 안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한국-싱가포르 FTA 규정(제10.5조)과의 차이.

### <보상>

● 보상은 지체없이 ‘완전히’(fully) 실현되어야 한다는 NAFTA 조항(Article 1110-3) 내용은 한국-싱가포르 FTA 규정(제10.14조 ‘손실 및 보상’)에는 없음.

### 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claims)

● 투자자보호 방법에 있어서 NAFTA의 특성은 투자자가 바로 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음.

- 이에 대한 판단도 한국미국의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민간기구가 판단을 한다는 데에 국가 주권의 심대한 침해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대국회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측 협정문 초안의 ‘제8장 투자(Chapter 8 Investment)’에는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정부 사이에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한 적법 분쟁해결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 삽입.(〈프레시안〉, 5월 19일)

- 이에 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도움을 받아 ‘한미 FTA: 투자자 대 국가 간 투자분쟁 해결 절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투자자-정부 소송 제도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음.

-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기업 메탈클래드 사건에서 보듯, 미국에서 반환경적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또 비의도적으로 반환경 기업 활동에 대해 미국 지방정부가 기업폐쇄 조치를 내렸을 경우 한국기업이 투자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보는가?

- 과연 ‘투자자-정부 소송 제도’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제도인가?

- 왜 투자자에 대한 국가 보상 조항으로 외국투자자의 이익 실현과 전혀 무관한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 이러한 투자자보호 조항이 내국투자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것은 내국투자자 차별대우(불평등 조항) 아닌가?

#### ① 메탈클래드 케이스

- 멕시코의 한 지방정부가 환경오염 이유로 한 미국기업 메탈클래드 유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을 불허한다는 결정에 대해, 이 기업은 해당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의 중재판결을 통해 1600만 달러의 배상금 승소 사건(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2000.8).

#### ● 환경 관련 조항의 허구성

- 나프타 협정문의 투자 조항에는 ‘국내 보건, 안전, 또는 환경 조치들을 완화하는 투자를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환경조치 조항(Article 1114)이 삽입돼 있으며, 또 협정문 안

에 별도로 마련된 환경 조항은 ‘무역·투자의 촉진을 위해 환경법에 규정된 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환경보호의 향상을 위한 강제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인센티브 등 탄력적이고 자발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1994년 나프타 발효 이후 환경 관련 조항은 수사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났음.

#### ② 로웬 그룹(Loewen Group) 케이스

- 캐나다 국적 회사 로웬 그룹이 미국 미시시피 주의 배심원 평결(verdict)과 법원의 항소보증금 규정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나프타 중재법정에 회부하는 사건(1998.7).

#### ③ 메타넥스(Methanex Corps) 케이스

- 세계 최대의 메탄올 생산 회사인 캐나다 기업 메타넥스(Methanex Corp)가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자사 제품인 'MTBE'에 대해 '발암성 휘발유 첨가제이며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불법화하자, 이에 맞서 미국 정부를 나프타 중재법정에 회부.

- 메타넥스는 지하수 오염은 어디까지나 휘발유 저장시설의 결함 때문에 생긴 것으로, 주 정부의 판단은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메타넥스가 무려 9억7000만 달러의 요구한 보상액 요구했음.

\* 이 사건으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2000년에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미국 헌법이 주에 부여한 공공정책 권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했음.

#### ④ 몬데브(Mondev International) 케이스

- 캐나다 부동산개발회사 몬데브가 보스턴 시와 보스턴 재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 재판에서 패소하자 이 판결에 도전하여 미국 정부를 나프타 법정에 회부. 몬데브 시는 그같은 판결은 나프타의 투자자 보호 조항 위반이라면서 500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를 중재에 회부했던 것임.

\* 미국의 주 검찰총장 회의(The National Association of Attorneys General; NAAG)는 주 정부의 주권을 옹호하는 결의안(Resolution: In Support of State Sovereignty and Regulatory Authority 2002.3.19) 채택,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시민의 복지와 환경을 보호하는 주 정부의 권한에 대해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했으며, 나아가 그 어떠한 통상협정도 미국의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음.

\* 미국 주 대법원장 회의(The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CCJ)는 결의안 26호 (Resolution 26, 2004.7.29) 채택.

- 대법관들은 나프타의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미국 시민과 기업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CCJ는 연방 정부에 대해 주의 사법주권을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상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음.

⑤ UPS(United Parcel Service)-캐나다 법적 공방: 미국택배회사 UPS사 캐나다 정부 상대 소송 제기(2000년).

- UPS사 "캐나다 정부가 NAFTA 상의 의무를 파기했다"고 소송 제기.

- 즉, UPS측은 캐나다 정부의 지원으로 조성된 우편산업 네트워크 때문에 캐나다의 공공 우체국은 UPS와 같은 사적 택배기업에 비해 부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NAFTA(11장)의 외국기업의 해당 정부 상대 제소 권한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으로 1억6천만 달러 요구

- NAFTA(11장)은 외국기업들은 그들의 투자가 상대국 정부의 조치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믿기만 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한 데 문제가 있으며,

● UPS의 제소 건은 FTA가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대표적 사례임.

- UPS의 주된 목적은 NAFTA라는 은밀한 수단을 이용해 캐나다 정부를 압박하고 캐나다 공공우체국 서비스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으며, UPS사가 승소하면 캐나다 정부는 공공우체국의 택배서비스 중지를 명령해야 됨.

- 캐나다 정부와 UPS사가 법적 공방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협상을 해서 타결하더라도 UPS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캐나다의 공공우체국 서비스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며, 이는 결국 UPS사가 돈이 되는 캐나다 공공 우체국을 희생시키면서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음.

● NAFTA로 인해 지금 캐나다-미국은 소송 중(미국 기업에 캐나다가 패소할 경우 전체 배상액은 약 4000조 수준)

▲ 미국 FTA 변화! : 올바른 방향의 FTA!

● 미국은 마침내 2005년 7월에 비준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서는 나프타와는 달리 ‘수용과 같은 조치(tantamount to expropriation)’에 대한 보상 조항을 아예 삭제했음.

- 그리고 공중의 보건과 안전,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는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다는 명시적 해석 규정(부속서 10-C)을 따로 두었음.

△ 한국의 (엄청난 정부보조)초고속인터넷망은 국가기간산업이나, 미국통신회사가 ‘경쟁’ 위반으로 제소하면 패소가능성이 큼.

●NAFTA ‘분쟁해결’(Section B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a party and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조항과 한-싱가포르 FTA 협정조항 간의 차이점

## 2.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가. 내국민대우 조항과 ‘한미 FTA-지자체 조례’ 충돌

●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내국민 대우’나 ‘시장접근 제한금지’ 등 FTA 기본 원칙과 배치되는 조항과의 관계 문제

-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금지, 이행요건 부과금지 등 원칙과 배치되는 국내법 조항은 유보안에 따로 적시하지 않으면 FTA 발효와 동시에 폐기되며, 이는 지자체의 조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결과 유보안 없이 FTA 원칙 위반으로 분쟁 발생 경우 배상 소송에 패소할 가능성 큼.

\* 2005년 9월, 대법원은 우리 농산물 사용 급식업체를 지원키로 한 전북도의회 조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자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을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음.

- 이는 NAFTA 체결 후 멕시코 정부가 미국 메탈클래드사 배상 소송과 유사한 국제사례에 따른 것임.

\* 전북도의회 조례 GATT조항 상충 사례

노무현 대통령 후보('02.12)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 일정비율 이상 의무사용 법제화” → 전북도의회('03.10) “우리 농산물 의무 구매’ 규정한 학교급식 조례 의결” → 통상협정 위반 여부 논란('04.1) “GATT 규정(3조 내국민대우 조항) 위배로 소송 제기됨 → 대법원('05.9) ”전북 도의회 조례는 내외국 제품을 동등대우토록 한 가트조항 위배“ 판결

● 미측은 연방정부 차원의 FTA와 주(州)정부 규정 사이의 비합치 사례에 대해 ‘포괄적 유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측 주장이 관철될 경우 FTA가 체결되더라도 문제 발생시 우리 기업은 미국 주정부와 별도의 협상을 벌여야 함.

- 우리 정부는 미측에 ‘포괄적 유보’ 대신 유보 대상 비합치 사례 리스트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나 우리측의 비합치 사례가 취합되어야 함.

- 우리측은 2005년 12월에 서울시와 종로구만을 대상으로 한 용역조사를 실시했고, 2006년 7월 지자체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한미FTA 기획단의 “한미 FTA 협정과 지자체 충돌 조례는 없었다”는 단정적인 해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전수조사의 경우 행자부가 “(충돌 사례 여부에 대해) 9월까지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한국일보>2006/08/13).

나. 금융서비스 분야의 ‘내국민대우’

- 미국측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의 원칙하에 신금융서비스 공급의 허용 요청 방침(6.5).

● 한국 은행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해외에 진출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성공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소매금융 대표 마이클 드노마, <연합뉴스> 2006/08/27)

- 외국계 은행은 항상 (위기상황에서) 공공성보다 주주 이익 우선주의일 수밖에 없음.
  - 한국경제의 어려운 국면에 닥쳤을 외국계 은행의 ‘반 공공성’은 경제위기 자체를 가속화시켜 국민경제를 결정적인 위기국면으로 몰고갈 수 있는 소지가 큼.
  - \* 국민은행, 신한지주의 외국인 지분은 80%를 넘었고, 대부분 시중은행은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상황이 닥치면 은행이 공공성보다는 주주이익부터 강화할 것임.
  - 외국계 은행의 국내 금융기관 잠식률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신금융서비스> : 첨단금융과 국부유출

- 첨단금융 시장으로 불리는 장외 파생시장에 외국계 진출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내금융권은 무장해제 수준을 벗지 못해 ‘금융 종속’이 우려되는 상황에 한미 FTA로 첨단금융 시장이 개방된다면 국내금융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음.
  - 전문 인력과 금융관련 국제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신금융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제한적단계적 허용이 바람직함.
  - \* 외국계 대형 금융자본의 국내시장에 대한 직접 진출도 본격화. 2조달러 장외파생상품 (주식연계증권(ELS), 선물금리, 금리스왑 등) 외국계 잔치: 걸음마 수준의 국내금융사는 거간꾼역에 그쳤고, 외국사는 1분기에만 1,880억원 수익(<한국일보> 2006/08/13)
    - 한미 FTA로 국내 파생시장에 대한 외국계 대형 금융자본이 더욱 밀려들 전망
- 산업 및 금융정책의 국가 역할이 상실된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음.

III. 한미 FTA의 역설

- 미국측 논리 중심으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 전략과 통일대비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적 자율성은 극도로 축소될 것임.

### <안보와 경제>

- 안보는 脫美에서, 국민경제는 從美에서 살 길(?)을 찾고 있는 모습임.
  - 국가안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미 간 미래 공동이익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 국민 경제는 초국적자본에 대해 한국의 국가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자유시장의 논리를 수용해야 함.

- 한국과 미국과의 정치적·군사적 ‘안보동맹’의 급속한 이완 경향에 반해, 한미 FTA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넘어 한미 (비대칭적) ‘경제동맹’ 수준으로 나아가는 형태임.
  - 과연 한미 FTA가 불안한 한미 안보동맹의 대체물이며, 한미동맹의 물질적 토대인가?

### <외국인투자 (FDI)의 역설>

- 외국인투자는 높은 투자수익과 함께 수익자본의 자유로운 해외유출을 정부가 적극 보장해줄 때 활발하게 끌어들일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환경권과 노동배제에 힘써야 하며, 이 경우 민주적 절차로 수립된 정부임에도 정부의 역할은 역설적으로 ‘반민주적’ ‘반민중적’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역설이 나타남.

- 당연히 GDP는 수치상 증대하나 국부의 증대 또는 직접적 국민 소득의 증대와는 무관하고,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정부 재정 원천인 세수 확보도 기대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주목해야 함.(론스타 사례)

-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나 칠레의 경우 고용 창출도 없었고, 임금도 오르지 않았으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음.
  -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은 미국기업의 수중에 돌아갔으나, 그렇다고 미국 기업이 멕시코와 칠레 노동자의 삶의 문제를 책임질 하등의 이유는 없음.
  - 초국적자본의 책임이기 이전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그들 정부의 책임임.

- 미국측은 최근 우리측과 교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과의 ‘개방요구 목록(Request List)’에서 우리측에 방송과 기간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을 완화해줄 것을 다시금 요구했음.

- 미국측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도 관심을 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은?

<FTA 체결의 우선순위 : 국가전략 방향>

●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FTA 체결 대상 17개국 가운데 농업피해를 고려해도 중국이 FTA 체결 순위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순위 5위)과 먼저 협상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해명을 요함.

-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 먼저나 하는 문제는 한국의 국가전략과 깊은 연관성을 지님

- 태국의 경우, 중국-ASEAN('05.1 발효), 호주('05.1 발효), 뉴질랜드('05.7 발효) 등과 체결 후 미국, 한국을 비롯한 7개국과 협상 중임.

△ 외교통상부의 통상과 관련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교섭'의 영역에 제한됨.

● 통상 교섭의 차원을 넘는 일반적 통상정책은 산업자원부 소관임.

- 새 의약품 등재 정책의 경우, 이 제도의 수립과 시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영역임.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국 상무부(MOFCOM), 일본 경제산업성(METI) 등은 대외교섭과 통상정책의 입안과 조정이 통합되어 있는데, 한국의 통상행정시스템은 분절적임.

#### IV. 협상 고려사항

● 협상이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타결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 협상시간은 미국측의 일방적 시간대임.

● 협상 타결이 항상 협상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님.

△ 한미 FTA 접근방향 : '낮은 수준'의 협상

- 보완, 수정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며,

- 특정 사안은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함

● 국가의 주권적 사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

- 투자자 제소권은 주권제약 조항이라는 점에서 문제되고 있음.

● 미국의 법, 제도, 관행만이 21세기 유일한 표준이 될 수 없음.

△ 한미 FTA 체결 원칙을 지키되, 협상타결 시한에 쫓길 필요는 없음.

- 미국에게 한국은 가장 의미 있는 FTA 체결국가가 될 것이며,

- 미국의 對中 견제의 동북아 전략구도에서 한국은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음.

- 초조한 측은 반드시 우리측이 아님!

● 한미 FTA 반대는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으나, ‘금년 내’의 시한에 구속될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협상타결 그 자체에 스스로 속박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한미 FTA 득실과 영향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각 항목에 대해 보다 차분히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져야 함.

“FTA 해도 좋고 안 해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8.14)

- 졸속 협상의 ‘후과’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

# 4

## 한미 FTA 포럼 토론문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 1. 한미 FTA를 해야 하는 추가적인 이유

최근 날로 심화되어 가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우리의 외통상관계를 다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한미 FTA 추진이 중요하다.

한미 FTA 추진 이유의 하나로 날로 고조되어가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경제통합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동아시아경제는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못지않게 통합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과 일본경제와 통합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상호의존도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들 사이에 놓여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대외통상정책차원에서 다변화 전략을 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에 더욱 더 중요해질 과학·기술 중심의 지식기반산업을 확충하고 특히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선점하기 위해 한미 FTA 추진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재 동아시아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과학·기술 중심의 지식기반산업을 확충하는 것과 비즈니스관련 서비스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확보를 선점하는 것이다. 앞으로 제조업분야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할 때 우리가 한 발자국 앞서가야 할 분야는 바로 지식기반산업과 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지식기반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화하고 중국과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WTO DDA 협상이 중단됨으로써 세계 각국이 FTA 중심의 지역주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FTA의 추진은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대비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지난 7월 24일 WTO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DDA 협상이 농산물 분야 등에서 타협이 어려워 중단되었으며 이제 세계 각국은 경쟁하듯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고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또 일본과의 FTA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는 지역주의의 파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2.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평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로 외국인투자의 확대, 고용창출 등이 전망치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줄 구체적인 경로가 보이지 않아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제예측모형을 통해 외국인투자 증대 효과, 고용 증대 효과 등에 대한 전망치가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즉 초기에는 서비스 산업에서 구조조정 측면에서 실업률이 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외국인투자의 유입이 증가될 때 고용창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즉 FTA 체결 이후에도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 규제개혁, 노사관계 개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태적인 경로나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예측치만을 제시하게 되면 일반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시장으로의 시장접근 확대보다 국내시장의 개방 확대를 통한 경쟁증진과 그에 따른 우리경제의 효율성 증대 등, 국내경제의 구조변화로부터 얻는 이득이 더 많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미국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방되어 있음을 가만할 때 양자간 협상 결과(양허)의 대차대조표는 미국에 더 유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한미 FTA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득은 중장기적인(동태적인) 것으로 미국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보다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확대, 새로운 외국인투자의 증가 등을 통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 이외의 경제적 이득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시간이 흘러야 나타나는 반면 손실은 피부에 와 닿고 단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득실은 구조적 비대칭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이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양보하는 것보다 반드시 커야 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한미 FTA체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얻어지는 이득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과 한국 어느 쪽이 더 이익을 보게 되느냐보다는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얼마나 더 미래에 이득을 보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 3. 정부대책에 대한 논평

합리적인 구조조정 및 지원대책, 장기발전 대책 및 국제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를 입게 될 분야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협상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많은 협상전문가들이 국내 이해집단과의 조정과 협상이 대외협상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제 이해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설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 등과 같이 미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발전방향과 경쟁력강화 대책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은 부처이기주의다. 국가 전체의 이해득실을 보지 않고 자기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 4. 정부의 협상 전략에 관한 논평

**한미 FTA 추진 핵심 이유와 우리의 양허수준 간에 일관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시장개방이 우리경제의 선진화와 효율성제고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많은 분야에서 시장개방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는 일반국민들은 시장개방의 실익을 이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도 그 기본배경 중에 하나가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큰 문제가 될 만큼 서비스시장의 추가 개방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이 어떻게 가능해질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큰 문제가 될 만큼 추가개방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제고와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더 과감한 개방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